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 ~ 9



제1534호 2009. 4. 14.

공 고

제 2009-286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2
제 2009-288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4
제 2009-289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6
제 2009-292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7
제 2009-293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8
제 2009-295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	9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

→ D-2일 편집·교정

→ D-1일 편집·교정

→ D일 발간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286호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,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 학교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“학교급식 등”이란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.
- “급식경비”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,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·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함.

나. 급식경비 지원(안 제3조)

-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다. 지원대상(안 제4조)

-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

라. 지원방법(안 제5조)

-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,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마.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, 제9조)

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구의원,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추천한 자로 위촉
-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- 심의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급식지원대상 선정,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등의 심의

바.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)

-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·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
-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기구에 위탁·운영 가능

사. 지도·감독 및 정보공개(안 제11조)

-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 변경·취소할 수 있으며,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.
- 학교급식 지원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에 비치함(☎490-3205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평생교육법」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총칙(안 제1조 내지 제5조)

-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.
- 평생교육진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,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나. 평생교육협의회(안 제6조 내지 제15조)

-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
-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- 평생교육기관·단체·시설 간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실무 협의회 구성·운영

다. 평생학습관(안 제16조 내지 제22조)

-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
- 평생교육 정보수집·제공과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- 평생학습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징수

라. 보칙(안 제23조 내지 제24조)

-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지원된 경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 확인 및 지도.
감독

마. 부칙(안 제1조 내지 제2조)

- 종전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에
의해 위촉된 것으로 봄

Ⅱ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에 비치함(☎490-3205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구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용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·운영·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둔 구민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
나. 장난감 대여센터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·개인 등에 위탁 가능(안 제8조)

다.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·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(☎490-3490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조항 개정 필요.
- 세부담급증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행 재산세제 일부개정 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(안 제21조 제1항)
 - 토지·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,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.
- 나.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(안 제21조의2 제3호)
 - 과세표준을 6천만원, 1억5천만원, 3억원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, 세율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조정.
- 다.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의 하향 조정(신설 안 제21조의3)
 - 지방세법 195조의 2 【세부담상한】 조항은 재산세액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항임에 따라 구세조례 세율편에 신설.
 -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0%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.
 -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3억원 이하 105/100, 3억원 초과~6억원 이하 110/100, 6억원 초과 130/100으로 3단계 상한율로 함.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에 비치함 (☎ 490-3345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가.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부담 경감 필요
- 나. 재래시장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 촉진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(안 제14조 제2항)
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(현행 5년간 50%감면 ➡ 100% 면제로 확대)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에 비치함 (☎ 490-3345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2009. 2. 12 공포·시행된 「주민투표법」이 “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, 투표연령 하향 조정(20세→19세)”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하고,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의 책무(안 제2조제4항)

-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
-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(안 제3조)
 -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(20세→19세)
-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,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(조례로 정함)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
 - 현) 주민등록번호 → 개)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현) 주소 → 개) 주소, 거소, 체류지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비치함(☎ 490-3313)

2009년 4월 14일

중 랑 구 청 장